

[공통사항]

| | |
|------------|---|
| ◆ 시민안전공제는? | ◉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는 동 상품에 가입한 회원(지자체)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(시·군·구민)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. <u>*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(공제수익자)에게 있습니다.</u> |
| ◆ 보장기간 | ◉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. |
| ◆ 보장내용 | ◉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가입담보 중 담보별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 |
| ◆ 주요용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⑤ 피공제자 :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회원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㉡ 공제수익자 :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피공제자 생존 시 : 본인 / 사망 시 : 법정상속인 / 미성년자 : 법정대리인⑥ 상해 :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⑦ 장해 :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(장해분류표 적용) |
| ◆ 공통면책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⑤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㉡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⑥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⑦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|
| ◆ 소멸시효 | ◉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 |

[폭발, 화재, 붕괴 상해사고 사망]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◆ 보상하는 손해 (만15세 이상) | ◉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 |
| ◆ 사고의 정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⑤ 폭발, 파열 및 화재(벼락 포함)사고㉡ 건물 및 건축구조물(건축중인 것을 포함)의 붕괴·침강 또는 사태사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붕괴란 폭발, 파열,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. 단,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.- 침강이란 폭발, 파열,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.-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.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⑤ 공통면책사항의 사유㉡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, 폭발·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⑥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|

[폭발, 화재,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]

| | |
|-----------|---|
| ◆ 보상하는 손해 | ⦿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[별표1]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 ※ 단,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. |
| ◆ 사고의 정의 | ⑤ 폭발, 파열 및 화재(벼락 포함)사고 ㉡ 건물 및 건축구조물(건축중인 것을 포함)의 붕괴·침강 또는 사태사고 - 붕괴란 폭발, 파열,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. 단,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. - 침강이란 폭발, 파열,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. -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.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⑤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㉡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, 폭발·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⑥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|

[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]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◆ 보상하는 손해 (만15세 이상) | ⦿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 |
| ◆ 사고의 정의 | ⑤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㉡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·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⑥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|
| ◆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| ⑤ 여객수송용 항공기 ㉡ 여객수송용 지하철/전철, 기차 ⑥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,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(전세버스 제외) ⑦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, 개인택시(렌트카 제외) ⑧ 여객수송용 선박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⑤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㉡ 시운전, 경기(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흥행(연습을 포함합니다)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⑥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⑦ 교통수단의 설치, 수선, 점검,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|

[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]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◆ 보상하는 손해 | ⦿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[별표1]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 ※ 단, 장해가 최저 지급률을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. |
| ◆ 사고의 정의 | ⑤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⑥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⑦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|
| ◆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| ⑧ 여객수송용 항공기 ⑨ 여객수송용 지하철/전철, 기차 ⑩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,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(전세버스 제외) ⑪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, 개인택시(렌트카 제외) ⑫ 여객수송용 선박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⑬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⑭ 시운전, 경기(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흥행(연습을 포함합니다)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⑮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⑯ 교통수단의 설치, 수선, 점검,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|

[의사사고 사망]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◆ 보상하는 손해 (만15세 이상) | ⦿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의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 |
| ◆ 사고의 정의 | ⑦ 의사 사고 - 의사사고란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, 홍수, 선박침몰, 실족사고 등으로 강, 하천,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. ⑧ 기타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회가 의사사고로 인정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.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⑬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|

[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]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◆ 보상하는 손해 (만12세 이하) | ⦿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」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 |
| ◆ 사고의 정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-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,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⑥ 자동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」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이륜자동차 및 「자동차관리법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<p>※ 단,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.</p>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⑦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및 회원이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⑧ 시운전, 경기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흥행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⑨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⑩ 자동차의 설치, 수선, 점검,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⑪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|

[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]

| | |
|-----------------|--|
| ◆ 보상하는 손해 | ⦿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. |
| ◆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⑦ 성폭력범죄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「형법」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(강간), 제298조(강제추행), 제299조(준강간, 준강제추행), 제300조(미수범), 제301조(강간 등 상해·치상), 제301조의2(강간 등 살인·치사), 제302조(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), 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, 제305조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의 죄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(특수강도강간 등), 제4조(특수강간 등), 제5조(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), 제6조(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), 제7조(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, 강제추행 등), 제8조(강간 등 상해·치상), 제9조(강간 등 살인·치사),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, 제11조(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)⑧ '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' 사실의 인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은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, 고소, 고발되어 검사의 의해 기소(약식기소 포함)된 경우를 말합니다.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⑨ 공통면책사항의 사유⑩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⑪ 공제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. 그러나 공제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.⑫ 피공제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|

[농기계 상해사고 사망]

- ◆ 보상하는 손해
(만15세 이상)
 - ⌚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

- ◆ 농기계의 범위
 - ⌚ 농기계라 함은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[별표1]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.

- ◆ 주요면책사항
 - ⌚ 공통면책사항의 사유
 - ⌚ 농기계를 시험용,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. 다만,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(조정)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.

[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]

- ◆ 보상하는 손해
 - ⌚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[별표1]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
※ 단,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.

- ◆ 농기계의 범위
 - ⌚ 농기계라 함은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[별표1]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.

- ◆ 주요면책사항
 - ⌚ 공통면책사항의 사유
 - ⌚ 농기계를 시험용,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. 다만,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(조정)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.

[감염병 사망]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◆ 보상하는 손해 (만15세 이상) | ☞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 |
| ◆ 감염병의 범위 | ☞ 제1항의 “감염병”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 제1호 나목에 정의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규정한 감염병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. 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타목에서 규정한 신종감염병증후군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의 커목에서 규정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) <u>※ 단, 감염병에 의한 사망의 인정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.</u>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⑦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|

[야생동물피해보상]

| | |
|-----------------|---|
| ◆ 보상하는 손해 | ☞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(벌, 뱀, 포유류 한정)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합니다. |
| ◆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| ⑦ 치료비 - 담보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농·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. ⑧ 사망공제금 - 담보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농·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|
| ◆ 기타규정 | ⑦ 담보지역 : 공제가입자(지방자치단체)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구역으로써 공제등록 증권상 언급된 지역(회원명)을 말합니다.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⑦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⑧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⑨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⑩ 기타 약관(본문)에서 정한 사유 |

[야생동물피해보상]

| | |
|-----------------|--|
| ◆ 보상하는 손해 | ☞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(벌, 뱀, 포유류 한정)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합니다. |
| ◆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⑤ 치료비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담보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농·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.⑥ 사망공제금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담보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농·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|
| ◆ 기타규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⑦ 담보지역 : 공제가입자(지방자치단체)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구역으로써 공제등록 증권상 언급된 지역(회원명)을 말합니다.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⑧ 공통면책사항의 사유⑨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⑩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⑪ 기타 약관(본문)에서 정한 사유 |

[개몰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]

| | |
|-----------|--|
| ◆ 보상하는 손해 | ☞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몰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「응급실」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(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)에게 지급합니다.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. |
| ◆ 용어의 정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⑫ 개 몰림사고 : 들개, 유기견,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합니다.⑬ 응급실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(중앙 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기관)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(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)에서 정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합니다.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|

[실버존 사고 치료비]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◆ 보상하는 손해 (만65세 이상) | ☞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[별표2]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, 공제수익자(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)에게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 |
| ◆ 교통사고의 정의 | ⑤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|
| ◆ 자동차의 범위 | ⑥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,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⑦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이륜자동차 ※ 단,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. ⑧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⑨ 시운전, 경기(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흥행(연습을 포함합니다)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⑩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⑪ 자동차의 설치, 수선, 점검,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⑫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|